

2001 地方財政調整制度의 運營方向

송하진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I. 序 言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재정운영방안은 지방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세입여건은 국제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하여 그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세원 또한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형평화시켜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의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 주는 전제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며, 이러한 재정조정시스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는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만큼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율이 15%로 상승된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이러한 토대 위에 지방자치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5%로 인상되고 내국세가 증가됨에 따라 2001년도 지방교부세는 10조 2,433억원이 되었다. 이중 내국세 증가에 따라 증가된 몫은 '99년대비 2조 7,011억원이며, 법정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은 1조 1,814억원이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의 감액·대체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대폭 증가되어 법정을 인상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II. 2001 地方財政 調整制度 現況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보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표 1> 참조).

2001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34.3%, 30.2%,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증가에 따라 내실 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2001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각각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앞으로 발전과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III. 地方交付稅制度의 運營方向

1. 2001 地方交付稅의 規模

<표 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구 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목 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균형발전도모	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재 원	내국세의 15.0%	주세 및 전화세 100% 교통세 14.2% 농어촌특별세 19/15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재원성격	일반재원(자주재원)	특정재원(지역개발사업분은 일반사업재원)	특정재원(의존재원)

※ 지방양여금의 교통세 양여율은 14.2%이나, 2001년의 경우는 2.4%임

<표 2> 2000~2001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규모

단위 : 억원, ()안은 %

구 분	2000		2001년 예산	증감현황	
	당초예산	추경예산		당초대비	추경대비
지방교부세	76,256	82,155	102,433	26,177 (34.3)	20,278 (24.7)
보통교부세	69,324	74,687	93,121	23,797 (34.3)	18,434 (24.7)
특별교부세	6,932	7,468	9,312	2,380 (34.3)	1,844 (24.7)
지방양여금	36,710	-	47,795	11,085 (30.2)	-
증액교부금	2,032	-	1,790	△242 (△11.9)	-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재원의 균형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 중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1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68조 2,886억원의 15.0%에 해당하는 10조 2,433억원과 법정교부세 이외에 575억원의 증액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0조 3,008억원이며, 법정교부세분 10조 2,433억원중 10/11(90.9%)에 해당하는 9조 3,12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1/11(9.1%)에 해당하는 9,31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운영하게 된다.

2. 普通交付稅의 運營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2001년도 보통교부세는 총 93,121억원으로 이 중 廣域市로 3,125억원(3.4%), 道로 1조 6,364억원(17.6%), 市로 3조 2,798억원(35.2%), 郡으로 4조 834억원(43.8%)이 배정되었으며

179개 교부대상 자치단체중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을 초과하는 서울, 경기도, 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과천·용인시등 9개단체와 2000년 교부단체였던 부천시를 포함하여 10개단체는 교부되지 않았고 2000년도 불교부단체였던 인천광역시가 교부단체가 되어 169개 단체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었다.

2001년 지방교부세 배정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조정기능을 중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을 현실화 하고 지역특수수요의 반영 확대 및 지방의 건정재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을 강화하였다. 그 주요 운영방향과 개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基準財政需要額 算定方式의 合理的 改善·補完

(1) 單位費用의 현실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단위비용의 산정방식은 2000년도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별 인구수 등의 측정단위수치가 전국평균치에 가까운 수치를 갖는 『표준단체』를 想定한 다음 상정된 표준단체와 유사한 규모의 자

치단체인 표본단체들을 선정하고, 표본단체의 예산분석을 기초로 측정항목별로 『표본단체 표준예산액』을 산정한 후 표준예산액을 표준단체의 측정단위 수치로 나누어 1단위당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표본단체의 표준예산액 算定은 원가방식에 의한 것으로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표준단체의 상정 및 표준예산 작성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와 실제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보정계수간의 연계성이 낮아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수요 반영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단위비용 산정 방법의 변경

2000년도 세출예산분석자료와 2001년도 교부세 산정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측정항목별로 예산을 분석, 표준수요에 적정한 측정단위를 찾아 통계수치를 적용, 자치단체별로 다중회귀식에 의한 표준행정수요액을 각각 산출한 다음 자치단체 종류별 표준행정수요액을 합산하여 기준통계 수치로 나누어 단위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예시> : 市 의회비 단위비용

표준행정수요액	기준통계수치	단위비용
52,305백만원	÷ 1,349	= 38,773,200원

*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Inyi) =
 $3.572728 + 0.509608 \ln A_1 + 0.474218 \ln G_1 + 0.0522A_2$

A₁ : 지방의회 의원수(1,349명), A₂ : 상임위원회수(1m232명), G₁ : 지방의회관련 공무원수(179명)

②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포함 및 단위비용의 현실화 추진.

지방교부세의 법정율 인상 이후 저소득층 지원등 추가부담수요를 기존 측정항목에 반영이 가능한 수요는 단위비용에 반영하였고 중등교원인건비 등 측정항목에 반영이 곤란한 수요는 기준재정수요에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수요는 단위비용 인상, 기능이 쇠퇴되는 수요는 단위비용 축소 조정함으로써 단위비용이 실제예산에 근접하도록 추진하였다.

(예) 수산비(군) : 204,000원 → 270,340원,
 (도) : 70,490원 → 55,910원

③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SOC 수요를 단위비용에 보완.

국가지원 사업중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지방SOC사업의 지방비 소요분을 반영하고 단위비용을 상향조정 하였다

(예) · 양여금지방비 부담분을 『도로비』~ 『환경공해비』~등에 반영
 · 재해복구 지방비 부담분을 『하천비』에 반영

(2) 補正係數 算定方法의 개선

그간의 보정계수는 전국 평균개념에 따라 수요를 형평화하고 낙후지역의 특수수요를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수요반영에는 한계가 있고 단위비용과 보정계수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수요를 추가반영할 수 있는 보정방식을 도입하였다.

① 전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계에 의한 『표준행정수요』 산출.

종래의 보정계수는 동종단체별로 도출된 회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광역시·도의 경우 단체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회귀계수를 산출할 수가 없었다. 통계학상 회귀식의 적용은 최소 20개이상 단체일 경우 적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일회귀식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정확한 회귀계수를 산출한 후 동종단체별로 보정계수를 산정토록 하여 보정산식을 합리화하였다.

② 자치단체 특수여건에 의한 지역균형수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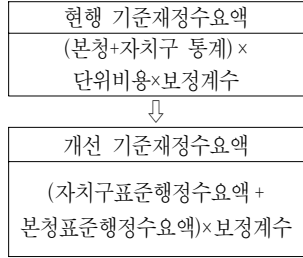
도서·오지·해안지역등 자치단체의 특수여건에 의해 일반화되지 않은 수요는 지역균형수요로 별도산정한 다음 표준행정수요에 가산한 후 이를 기초수요로 나누어 보정계수를 산정하였고 일부 측정항목은 지방예산과 재정수요간 경비의 근접성과 구성 비중이 감안될 수 있도록 「비중유지계수」(ω)를 적용하였다.

$$\text{보정계수} = \left(\frac{\text{표준수요액} + \text{지역균형수요액}}{\text{기초수요액}} \right) \times \omega$$

※ 기초수요액 = 측정단위 × 단위비용

③ 특별·광역시 보정방법 개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하여는 본청과 자치구의 통계를 합산한 후 전국 광역시 평균 기준으로 일괄 보정을 실시 하였으나 실재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정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본청과 자치구의 표준행정수요를 각각 나누어 산출한 다음 본청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보정계수는 합산된 재정수요(표준행정수요+지역균형수요)와 당해 광역시의 기초수요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예시> : 대구광역시 공원녹지비의 경우

$$\frac{(\text{본청 표준행정수요}) (\text{자치구 표준행정수요}) (\text{자치구 지역균형수요})}{\text{공원면적 } 74,721 \text{천m}^2 \times \text{단위비용 } 13,500 \text{원}}$$

$$= \frac{(785\text{백만원} + 449\text{백만원}) + 295\text{백만원}}{74,721 \times 13,500} = 1.515$$

(3) 自治團體의 여건을 감안한 特殊需要 반영대상 확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형평화와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새로운 특수수요 반영 필요성이 계속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첫째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서오지지역의 읍면동비, 홍보비, 지역개발비 수요와 간이상수도설치와 관련한 운영비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지방비부담분을 증액 반영하고, 둘째, 도서·해안·댐지역은 현행 보건

위생관리 교통불편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됨을 감안하여 방과제, 적자버스노선 등의 수요를 추가 반영하고, 셋째, 그린벨트·자연환경보존지구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수요를 도시계획비 및 공원녹지비 항목에 보정하고, 넷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 등에 대하여는 군인(미군포함)으로 인한 생활환경처리비용의 증가수요와 지역균형개발을 감안하여 종토세 과세기준으로 지역개발비에 반영하였다. 이밖에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및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소하천정비지역 관련수요도 지역균형수요로 반영하였다.(<표 3> 참조)

(4) 國公有財産 非課稅·減免地域 등의 財政補填

국공유재산 및 소재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세수손실에 대해 재정보전 필요하여 종토세중 국공유지 비과세·면제금액을 추정, 재정수요로 간주하여 교부세 산정시 반영하였다.

<예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수요반영액) (비과세면적) (종토세평균세액) (적용율)
 · 799백만원=61,802천㎡×64,655원×20%

(종토세평균세액) (유성구종토세액) (종토세부과면적)
 · 64,655원=6,814백만원÷105,390천㎡×1,000

<표 3> 지역특수수요 반영항목

구 분	2000년	2001년
계	10개항목 7,402억원	16개항목 14,882억원
• 낙후지역	읍면동비, 종토세, 지역개발비	읍면동비, 홍보비, 지역개발비
• 해안·댐지역	지역개발비	청소비, 보건위생비, 농업비, 수산비, 교통관리비
•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비	도시계획비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녹지비	공원녹지비
• 군부대주둔지역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환경공해비, (지역개발비)
• 상수원보호구역, 인구감소지역, 폐광·개축지역, 국·공유재산 비과세지역 등	상수도비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비), (지역개발비), 지역경제비, (읍면동비), 하천비

(5) 都·農통합시 財政需要 補強
 도농통합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시점부터 5년간 시의 동지역
 과 읍면지역을 분리산정 하였으나 분리
 산정기간의 만료되고 추가적인 재정보
 전 대책이 요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통합시점 이후 5년간은 현행대로 분
 리산정하고 분리산정 경과후 5년간은 기
 준재정수요액의 9%를 가산하되 1년 경
 과마다 2%씩 체감하도록 하였다.

- 분리산정 만료 1년차 : 9% 가산
- 분리산정 만료후 2년차 : 7% 가산
- 분리산정 만료 3년차 : 5% 가산
- 분리산정 만료후 4년차 : 3% 가산
- 분리산정 만료 5년차 : 1% 가산

나. 基準財政收入額 算定方式의 改善

(1) 地方稅 推計方式의 보완
 '99 제도개선 전에는 과거 5년간 과세
 자료에 의한 DIVISIA 방식을 활용하였
 으나 이 방식은 IMF 여파에 따라 경기
 침체 지역이 과다 추계되는등 지방세 추
 계가 부정확하여 개편된 지방세제를 감
 안한 합리적인 세수가 되도록 추계방식

을 개선하였다.

① 세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추계방식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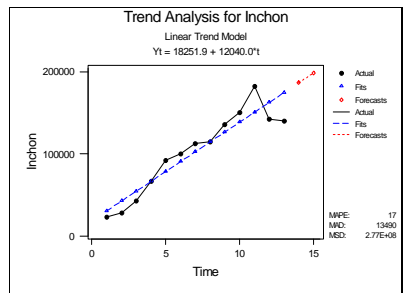
세목별 징수액('87~'99)을 이용, 시
 계열 방식으로 추계하되 세목별·지역
 별 특성에 맞도록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
 용하였다.

세수증가세목(재산세, 지역개발세) :
 선형추계방식 적용
 세수정체세목(종토세, 취득세) :
 S-curve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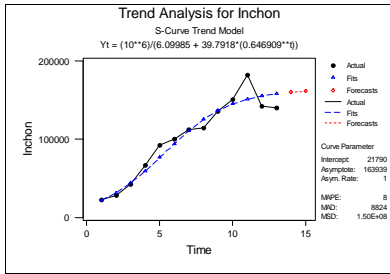
발전성장지역 : 선형추계방식 적용
 발전정체지역 : S-curve 적용

<추계방법간 예측결과 비교>

선형추계방식



S-CURVE방식



또한 세수추계에 적용되는 징수액 통계는 세목별 통계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최적연도 구간을 채택, 적용하였고 IMF 여파로 인한 지방세 과다 추계 방지를 위해 지방세, 종합토지세 추계시 2000 예산액 고려하였다

※ 세목별 지방세 적용기간

- 13년간('87~'99)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11년간('89~'99) : 경주마권세, 농지세
- 10년간('90~'99) : 도축세, 종토세, 재산세
- 8년간('92~'99) : 자동차세

② 2001 세제개편에 부합되도록 추계기법 보완 적용

자동차관련 세제의 감세개편과 이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증세개편 되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2001 세제개편 기본방

향에 맞도록 세수추계기법을 보완 적용하였다.

※ 세목별 추계방법

- 자동차세 - 현차 차등과세로 16%감소 추계
 - ('92~'99 징세액에 기초한 추계세액) × 84%
- 면허세 - 자동차 면허세 폐지관련 72% 감소추계
 - ('87~'99 징세액에 기초한 추계세액) × 28%
- 담배소비세 - 예년보다 1.1% 증액추계 (갑당 460원→510원)
 - ('99 담배소비세액 ÷ 인구수) × 2001예상인구수 × 1.1
- 주행세 - 2000실적의 260% 증액추계 (교통세의 3.2%→11.5%)
 - (2000 당해단체 주행세÷2000 전국의 주행세)×2001전국의 주행세추계액(6,667억원)

(3) 經常稅外收入 補正의 新設

지방세의 경우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나 지방세 성격이 강한 일반재정보전금 외에는 세외수입은 반영 제외되었으나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기능을 수행하는 재원임을 감안,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외수입중 용도를 정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적용되는

안정적인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세외수입의 일부(80%)를 보정하였다. 자치단체별 경상세외수입의 반영은 수입원별 추계공식의 도출이 어려워 과거실적(3개년) 평균을 적용하였다

- ('97수입실적 + '98수입실적 + '99수입실적) ÷ 3

(4) 一般財政補填金 反映率 조정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은 징세효과(Tax effect) 차원에서 도와 시군간 반영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즉 도에는 징수교부금의 100%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시·군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의 80%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어 인구(60%) 및 징수실적(40%)에 의해 배분되고 시책재정보전금을 운영함으로써 징세효과를 목적으로 한 도와 시군간 반영율 차별화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도와 시군이 동일 비율로 적용되도록 시군 반영율 상향 조정하였다

- 도 (기준재정수요액) : 일반재정보전금의 100%
- 시·군 (기준재정수입액) : 일반재

정보전금의 80%→100%

다. 財政健全化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강화

(1) 기존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재원보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적 지출억제 및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가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관심 부족으로 경쟁의식이 미흡하여 지방의 재원보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적 지출억제 및 세입증대 노력을 적절히 유도하는 선에서 확대하였다. (8종 ⇒ 11종)

- 공무원정원 감축
- 지방세 징수율
- 경상경비 절감
- 주민세개인균등화
- 일용인부 절감
- 과표현실화
- 읍면동 통합
- 상수도 현실화율

+

- 탄력세율 적용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 지방청사관리의 적정화

- ※ · 공무원정원 감축 강화 : 표준정원 50% → 100%적용
- 탄력세율 적용 : 적용세율이 기준세

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사용자 · 수수료 요율현실화 : 사용자 · 수수료 요율현실화가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지방청사관리의 적정화 : 자치단체 보유 청사면적이 표준청사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역인센티브 부여

(2) 인센티브 적용방법의 개선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 · 수입액 산정공식에 포함되어 자치단체 등이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 보정계수 또는 지방세 추계시 포함된 인센티브를 별도의 『인센티브』 잔정공식으로 분리하고 이를 종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지방세 징수율(징세비)을 기준재정수요액 인센티브에서 수입인센티브로 전환하였다.

①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계수에 포함된 수요인센티브를 별도 구분 적용하였다.

<예시> 일반관리비의 경우

- 종전 : $\{1 + (\frac{\text{동종단체 일용인부 사용지수}}{\text{동종단체 일용인부 사용지수의 평균}})\}$
 + (동종단체 경상경비 증가율평균
 - 당해단체 경상경비 증가율)
- 개선 : 공무원정원, 일용인부 인센티브 →

별도산정

② 지방세 추계액에 포함된 수입인센티브를 구분 적용하였다.

<예시> 종합토지세의 경우

- 종전 : $Y_t = 10^2 \div (a + bR^2)$
 $Y_t \times \{ 1 \div (\text{당해단체 과표 현실화율} \div \text{동종단체 과표현실화율 평균})$
- 개선 : $Y_t = 10^2 \div (a + bR^2)$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인센티브
 → 별도산정

③ 기준재정수요액에 수요인센티브, 기준재정수입액에 수입인센티브 항목을 두어 인센티브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수요인센티브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 + 보정수입 + 수입인센티브

라. 인센티브 항목별 적용방법

(1)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인센티브

① 인력감축을 위한 표준정원 반영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축소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두는행정

기구와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새로운 표준정원 시행이 『인건비』 수요의 급격한 변화방지를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는 신표준정원의 50%를 반영하였고 2001년도는 100%를 반영하였다.

(당해단체 표준정원 - 당해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② 사무보조일용인부 절감 『인센티브』 반영

자치단체의 일용인부 사용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인부 사용인원이 전년도 보다 적은 단체는 수요를 증액하고 많은 단체는 감액 반영하였다.

(1999년도 사무보조원수 - 2000년도 사무보조원수) × 1인당 일용인부 경비

③ 경상적경비 절감 『인센티브』 규모 확대

자치단체별로 지방예산과 투자비 규모에 따른 경상경비 표준규모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체는 역인센티브, 미달하여 집행하는 단체는 인센티브 부여하였다. 이는 자치단체의 경상경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집행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경비규모가

『표준경비』보다 적은 단체는 수요를 증액하고 많은 단체는 감액 반영하였다

(당해단체 표준경상경비 - 당해단체 2000 경상경비)

④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반영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지방재정운영상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수요를 증액하고 낮은 단체는 감액 반영하였다.

상수도요금 결함차액 × (2000당해단체 요금현실화율 - 99당해단체 요금현실화율)

⑤ 읍면동 통합유도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 과소동의 통합 및 폐지단체의 통합 전·후의 동수와 공무원수를 고려 수요증액 반영하였다.

(통합이전 해당 읍면동의 표준행정수요 - 통합이후 해당 읍면동의 표준행정수요)

⑥ 지방공공청사 적정화 반영 (신규)

지방청사면적이 공무원수에 기초한 표준시설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인센티

브, 초과하는 경우 역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청사표준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 - 청사 보유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

(2) 基準財政收入額에 반영

① 지방세 징수를 제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기준수입을 감액하고 낮은 단체는 증액 반영하였다.

당해단체 지방세 징수실적 × (전국평균 징수율 ÷ 당해단체 징수율) - 당해단체 지방세징수실적 × 0.8

②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99부터 10,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함에 따라 개인균등할 인상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기준수입을 감액하고 낮은 단체는 증액 반영하였다.

(동종단체 전국최저 개인균등할 기준세액 - 당해단체 개인균등할 기준세액) × 부과인원

③ 과표현실화를 제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표현실화를 촉

구하기 위한 것으로 과표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기준수입을 감액하고 낮은 단체는 증액 반영하였다.

종합토지세 징수액 × (전국평균 과표현실화율 ÷ 당해단체 과표현실화율) - 종합토지세 징수액

④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신규)

자치단체가 기준세율의 50%범위까지 증감적용이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탄력세율 적용으로 증액된 세수의 일정분을 기준수입에서 공제하였다.

(지방세법상 기준세율 - 당해단체 기준세율) × 지역개발세 과세물건수

⑤ 사용·수수료현실화율(신규)

사용료·수수료 요율현실화율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실적 × (동종단체 평균 현실화율 ÷ 당해단체 평균현실화율)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실적
* 평균현실화율 : 사용료·수수료 종목별현실화실적 ÷ 사용료·수수료 금액별 현실화실적) ÷ 2

3. 特別交付稅의 運營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하는 각종재해, 세수결함, 공공복지시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다.

2001 특별교부세 재원은 지방교부세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9,312억원이다.

가. 施策事業需要

시책사업수요의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30%해당액으로, 교부대상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 역점시책 추진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과 소요사업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일정한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2001년도는 국가적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지방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핵심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방SOC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사업, 달동네정비 등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긴요한 국가역점시책을 선정하여 matching 방식으로 중

점지원될 예정이다.

나. 財政補填需要

재정보전수요는 전국체전등 국가적 행사관련수요, 행정구역개편수요, 재정결함보전수요, 지방채무보전수요, 지방재정부담수요등 기존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전수요의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20%해당액으로 당해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되 교부대상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15개 항목을 산정대상으로 항목별 지방비소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에 의하여 교부하게 된다.

다. 災害對策需要

재해대책수요는 자연재해, 농어업재해, 인위재해, 재해·재난예방 등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거나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된 복구소요액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재해대책수요의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10%해당액으로 교부대상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4개 항목에 한정하고 있으며 복구소요액중 지방비소요액의 일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교부하게 된다.

재해대책수요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피해액이 소규모이거나 지방비 소요액을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당해연도 재해대책수요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 지방채를 발행한 후 다음연도에 상환재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라. 地域開發需要

지역개발수요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지역특수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업수요를 조화롭게 연계 시켜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보완적 기능을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지역개발수요의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20%해당액으로 매년도 6월30일까지 배정하게 되며 시군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수, 지역개발투자수요,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종합지수를 기초로 지원기준금액을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된다.

2001년도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가급적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 特定懸案需要

특정현안수요는 지방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또는 보수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특별수요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현안수요의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20%해당액으로 교부대상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서 도로교통, 하천관리, 지방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14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부기준 및 교부대

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심사한 후 교부하게 된다.

4. 增額交付金の 運營

증액교부금은 법정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5.0%)이외에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증액교부되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 일반회계 증액교부금과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 서 이전되는 농특세 증액교부금이 있다.

2001년도 증액교부금은 지방재정보전차원인 전남도청이전사업비 315억원, 대전 현충원 진입로 정비 110억, 전북도청 이전신축비 150억원 등 일반회계 증액교부금 575억원과 농특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분을 보전하는 농특세 증액교부금 1,79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가. 地方財政補填 관련 增額交付金

지방재정보전 관련 증액교부금은 법정분 지방교부세외에 부득이한 지방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는 전남도청이전사업비, 대전 현충원 진입로 정비사업비, 전

북도청 이전신축사업비 등 총 575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나. 農漁村特別稅 關聯 增額交付金

농어촌특별세 관련 증액교부금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인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 재원으로 지방교부금 예산항목에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도 사업별 재원규모를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20억원, 재경지정리사업 251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42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4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57억원, 공공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95억원, 어항건설 228억원, 임도건설 242억원,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15억원 등으로 이는 농림부, 해양수산부등 6개 관련 부처(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9개 대상사업에 교부하게 된다.

다. 法人稅關聯 增額交付金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의 신설이 있는 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자치단체는 제외)의 지역경제활성화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신설된 제도이다.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의 교부방법은 먼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 그 주된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10년간 교부하게 되며, 또한 법인이 주된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는 그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그 사업장을 신설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교부하며, '98년도와 '99년도 각각 500억원 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도이후 지방교부세 범정율 인상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차원에서 당초 도입된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계속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V. 地方讓與金制度의 運營方向

1. 2001 地方讓與金の 規模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로서 징수한 특정세목 세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도로, 수질등 특정목적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세의 100%와 전화세의 100%, 교통세의 14.2%(2001년의 경우 2.4%)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전입되는 금액(농특세의 19/150 상당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지방양여금은 주세 2조 5,094억원, 전화세 1조 3,027억원, 교통세 2,606억원 그리고 농특세전입금 3,065억원이나 '99년도 세입결산결과 세수잉여금 4,003억원이 반영되어 총양여금 재원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조 7,795억원으로 이들 재원은 지방양여금법령에 따라 5개 대상사업 15개 단위사업에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통세의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조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전화세를 2001년 9월 1일부터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로 통합을 하고, 지방양여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대체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세원의 신장성이 높은 재원이다.

다만, 교통세의 양여금액은 교통세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액 도로정비사업에 배정하고, 여타사업은 주세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을 <표 4>와 같이 조정하였다.(국세와 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2000. 12. 29)

2. 地方讓與金の 運營

가. 道路整備事業

도로정비사업은 교통세양여재원전액(전화세양여재원전액 + 교통세양여재원전액) 및 주세양여재원의 147/1,000 해당액과, 농특세전입액의 6/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조 2,928억원 으로 2000년도 1조 7,800억원보다 28.8%가 증가된 규모이며, 사업별로는 광역시도 3,796억원, 지방도 4,218억원, 시의국도 3,164억원, 시의시도 2,952억원, 군도 3,796억원, 농어촌도로 5,002억원이 배정된다.

양여방법은 광역시도의 경우 미개설도로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하고, 지방도의 경우 개설·포장사업은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하며, 교통정체구간 소통사업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며, 유지관리사업은 포장도

<표 4> 대상사업별 배분비 조정내역

사업별	현행	개정
○ 도로정비사업	· 특정사업재원 630/1,000 · 농특세 6/10	· 교통세양여재원전액 · 주세 147/1,000 · 농특세 6/10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특정사업재원 115/1,000	· 주세양여재원 141/1,000
○ 수질오염방지사업	· 특정사업재원 245/1,000 · 주세양여재원 100/1,000 · 농특세 4/10	· 주세양여재원 400/1,000 · 농특세 4/10
○ 청소년육성사업	· 특정사업재원 10/1,000	· 주세양여재원 12/1,000
○ 지역개발사업	· 주세양여재원 300/1,000	현행과 같음

주) 2001년도는 교통세양여재원 전액을 전화세양여재원전액과 교통세양여재원으로 함.

로의 연장비율과 해당사업을 심사하여 양여하게 된다.

시의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고, 시의시도의 경우는 4/14는 동지역의 시도정비에, 10/14은 읍면지역의 시도정비에 배분한다. 군도의 경우 개설 및 포장사업은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하고, 교통정체 구간 소통사업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며, 유지관리사업은 포장도로의 연장비율과 해당사업을 심사하여 양여하고, 농어촌도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의 미포장도로의 연장비율에 따라 양여하게 된다.

나. 農漁村地域開發事業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주세양여재원의 141/1,000인 3,861억원으로 2000년도 3,050억원보다 26.6%가 증가된 규모이며, 사업별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548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313억원이 배정된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 또는 군관할구역내의 면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대상면(765개면)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대상면수(47개면)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면수(399개면)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게 된다.

다. 水質汚染防止事業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은 주세양여재원의 400/1,000 해당액과 농특세전입액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 1조 2,250억원으로 2000년도 9,317억원보다 31.5%가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3억원, 하수관거정비 3,638억원, 분노 및 축산폐수처리 882억원, 오염하천정화 441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 1,226억원이 배정되게 되며,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게 된다.

라. 靑少年育成事業

청소년육성사업은 주세양여재원의 12/1,000에 해당하는 329억원으로 2000년도 265억원보다 24.1%가 증가한 구

모로 청소년 수련관·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야간 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등 청소년시설 운영비에 배분된다.

양여방법은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가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며 기존사업추진지역,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마. 地域開發事業

지역개발사업은 주세양여재원의 30/1,000에 해당하는 8,427억원으로 2000년도 6,278억원보다 34.3%가 증가한 규모이다.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방법은 주세양여재원의 20%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고, 주세양여재원의 8.5%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농촌지도직 및 농업연구직 공무원 정원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며, 주세는 1.5%는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비율에 따라 양여하게 된다.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방법인 재정보전은 '94년도에 유류관련특별소비세의 목적세(교통세)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건비보전은 '96~'97년도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전환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부담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일반사업투자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보전은 '97 소하천정비사업의 기능이양에 따른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비 재원은 자치단체별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반투자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V. 向後 發展課題

1.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

가. 基準財政需要 算定方式의 改善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지방재정수요를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야말로 균형있는 보통교부세의 배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에 대한

예산운영 현황과 업무수행형태 등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수요감소 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측정항목의 지속적인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측정단위는 대체로 관련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상관계수가 높은 통계자료를 택하고 있으나 계량분석적 방법 등에 의한 타당성을 재검토 보완하여 보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수요를 심층분석하여 다양한 지역의 수요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정방법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조세지출 예산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여 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수요를 비롯하여 주민 복지, 지역개발과 관련된 수요는 증가되어야 하며, 경상적인 일반행정수요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基準財政收入 算定方式의 改善

기준재정수입액 추계방식은 변화되는 세제개편을 수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추계기법도 보완하며 2001년도에 처음 반영된 경상세외수입의 합리적인 추계기법의 개발도 모색해나가는 한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차액을 줄이기 위한 결산차액의 보정기법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다. 인센티브 擴大 및 패널리티制度의 施行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감축, 경상경비절감, 세입증대 등을 통하여 자구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이후 취약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선심성·전시성 경비의 증가,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소규모 분산투자 등 지방재정의 방만한 우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여, 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경비

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패널티제도를 도입하여 재원의 낭비성·전시성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地方讓與金制度의 改善

지방양여금은 국가와 지방간의 구조적인 재정불균형체제하에서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중앙·지방간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통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지방에 이전된 지방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서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약 8%의 비중을 차지)

그러나 최근에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양여금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도운영성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제도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중간적 역할을 수

행하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제3의 제도라는 올바른 인식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地方讓與金財源의 安定的 確保

지방양여금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 하는 것은 양여금대상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관건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2001년도 양여금재원은 주세, 전화세, 교통세 일부, 농특세전입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재원 모두 미래가 상당히 불안정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주세는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가해지는 세원으로 '99년도에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72%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나 맥주는 2000년 115%, 2001년 100%로 인하조정하였음에도 아직도 소주나 위스키에 비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2004년까지만 존치하는 한시재원이며, 금년도에 전화세의 대체재원으로 양여받는 교통세도 신장율은 높은 세원이지만 2003

년까지만 존치되고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목적재원이고, 더우기 재정부에서는 목적세의 조기폐지방침에 따라 2003년을 앞당겨 2002년도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등 양여재원 모두가 상당히 불안한 재원이다.

따라서 교통세폐지에 따라 양여재원을 조정할시에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안정성과 신장율이 있는 세율의 일정으로 양여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 對象事業間의 財源配分比率 調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 물 관리종합대책(1996~2011)의 효율적 추진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를 2005년까지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양여재원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양여재원인 주세의 6.6%를 축소, 수질개선에 확대하여 도로와 수질부문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또한 농특세전입비율을 현행 19/150에서 23/150으로 하여, 4/150를 수질오염방지사업부문에 추가할 것이다.

다. 對象事業의 追加調整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지방양여금대상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광역시구도의 대상사업에 포함이다. '95. 12. 26 도로법이 개정되어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가 신설되었으나 정비사업 재원의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상사업에 추가하여 지원하므로 대도시안에서 중·대로간의 연계성확보를 통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양여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홍수등 재해의 원인이 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정보화기반구축사업』 및 시군의 읍지역을 지역행정·문화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육성사업』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

소년육성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라. 讓與金制度運營의 合理的改善

지방양여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 및 보완해 나갈 내용으로는 먼저, 양여금사업에 대한 지방재원부담의 완화이다.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원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과는 달리 법상 의무는 아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사업소관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침)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원부담의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여 지방비부담을 점차적으로 완화·조정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양여금 재원의 세수증가와 연계하여 계속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배분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이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중 통계에 의한 객관적 기준으로 배분되지 않고 심사에 의하여 배분되는 도로정비사업의 일부,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중앙부처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배분액을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심사에 따른 객관성 결여 등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통계나 공식을 적용하여 객관적 배분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도 및 지방도의 양여금산정시 인구수, 자동차대수, 공시지가,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는 보정지수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상·하한치를 두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간 편차가 60%이상이 되어 격차가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양여금운영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양여금지원의 포괄지원체제로 전환을 확대하고,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익년도 양여금결정시 반영 및 양여금대상사업과 자원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양여금대상사업의 필

요성, 투자우선순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규칙에 의한 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사 확행 후 대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VI. 結 語

2001년도는 내국세 규모 증가와 법정율 인상효과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가되어 지방재정운영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확충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확충된 재원이 낭비적이거나 소모성 경상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되

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기구축소, 인력감축,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만 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이에 맞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의 재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역할이 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구적 노력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분발과 촉매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배전의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시사용어 해설

● 모랄 서베이(Morale Survey)

사기조사 또는 근로의욕조사. 종업원이 기업에 대해 어떤 심리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노동조건, 이해관계, 대우 등에 대해 불만이나 희망을 청취, 기업이 노무관리에 참고하여 사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편집 실 -